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1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이만희·박정하·강선영

구자근 • 이달희 • 서천호

권성동 • 박충권 • 김종양

서범수 · 조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과되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현장조사 시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2조).

법률 제 호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벌칙) ① (생 략)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		
	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u>업</u>		
	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		
	<u>행위자</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제22조(과태료) <u><삭 제></u>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			
<u>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u>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			
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